

2020년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

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2 규정 및 『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』 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2월 17일

서울특별시장

1. 용자

1. 용자대상

- 가.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
- 중소기업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
 -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(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)

나. 기 융자 받아 상황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

다.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

2. 신청기간 : 2020. 3. 2. ~ 3. 13. (토·일요일 제외, 09:00~18:00)

3. 융자 신청서(사업계획서 양식 포함) 교부

가.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교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 서울소식(새소식)란 및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(<http://env.seoul.go.kr>) 새소식란에 신청서(사업계획서 양식 포함)가 게재되어 있습니다.

4.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

- 가.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(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)
나.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
5. 제출서류

가. 융자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 1부

-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
- 사업장개요(사업주체, 사업장 부지면적 등)
- 주요시설·장비 현황
- '19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활용품(원료) 구입 실적 및 근거서류
- 2019년 재생제품 생산실적
- 육성지원금 사용계획 및 기대효과
- 공정흐름도

나. 구비서류

- 1)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- 2)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1부
- 관할세무서 발행 및 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
- 3) 폐기물처리(재활용)신고필증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
- 4)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(세금계산서, 계량증명원 등)
- 5)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 해당시 지정서 사본 1부

6. 융자 및 상환조건

가. 융자지원액 : 총 3억원 이내(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, 운전자금 1억원 이내)

나. 대출금리 : 연 1.45%

다. 상환조건

- 1) 시설자금 :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
- 2) 운전자금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7.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

가. 시설자금(재활용시설·장비의 개선·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)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.

- 나. 이미 시설투자 등을 한 이후 투자금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용자신청은 불가함.
- 다.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, 용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
- 라. 용자승인은 서울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심의결과에 따라 용자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(하향조정 포함)될 수 있음
- 마. 용자추천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용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용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
- 바. 용자금은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완료하여야 하며, 지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(증빙자료 첨부)를 제출하여야 함
- 사.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을 받은 때는 용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, 향후 3년간 용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8. 지원업체 선정 : 서울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사업자 선정 (4월초 선정예정)

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, 위탁은행(우리은행)의 여신규정에 따라 용자가 진행되며,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(전화: 서울 2002-3555)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9. 지원업체 준비사항 : 반드시 은행 여신 규모 확인 후 용자 지원 요함

- ※ 서울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 가능
- ※ 지원업체 선정이후 은행 여신에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. 끝.